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크로아티아 공화국(Republic of Croatia)
2. 수도 : 자그레브(Zagreb, 79만명)
3. 인구·면적 : 422만명(2016.10.), 56,542㎢(한반도의 약 1/4)
4. 공용어 : 크로아티아어(라틴문자 사용)
5. 1인당 GDP : 13,624불(2016년)
6. 독립일 : 1991.6.25.(구 유고연방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의원내각제(대통령중심제 요소 가미)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Croatia

2. 연혁

○ 1963. 6. 5. 구 유고연방(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) 헌법재판소 설립

○ 1990. 12. 22. 크로아티아 공화국 헌법 제정

○ 1991. 6. 25. 크로아티아 독립 선언

○ 1991. 10. 8. 크로아티아 공화국 공식 분리 독립

○ 1991. 12. 7. 초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취임으로 크로아티아 공화국 헌법재판소 출범

○ 2013. 11. 8. 제5차 헌법 개정

3. 구성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과 부소장(Deputy President)

을 포함함 1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

○ 재판관은 모두 국회에서 2/3 이상의 표를 받아 선출. 임기는 8년이며 전임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재판관이 선출되지 않거나 취임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까지 전임재판관의 임기 연장

○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4년.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으로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

○ 재판관 자격 : 15년 이상(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12년 이상) 법률사무에 종사한 법률가(판사, 검사, 변호사 및 법률학 대학교수)

4. 권한

○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

○ 기타 법령의 위법 및 위헌 여부 심판

○ 국가, 지방 및 공공단체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

○ 합헌성 실현의 감시역할. 위헌적·위법적 사례를 국회에 통지

○ 입법, 사법, 행정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

○ 탄핵심판

○ 정당해산심판

○ 선거 및 국민투표 소송

○ 법관에 대한 파면 등 징계사건 심판

5. 심리 및 결정

○ 주요 사건의 심리는 재판관 전원회의(Session)에서 하며,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심사, 헌법소원심판, 법관징계 판결의 항소심판, 선거소송심판은 지정재판부(Chamber)에서 담당

○ 심판사건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재판관 전원의 과반수의

찬성으로 결정

○ 국회에서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요구시 재판관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 결정

○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형식에는 판결(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, decision)과 결정(판결 이외의 모든 경우, ruling)이 있으며, 판결과 결정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

○ 다수의견에 반대한 재판관은 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이유를 제출할 수 있고, 이를 공표할 수 있음

6. 기타사항

○ 헌법재판소는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입법·행정·사법부 이외의 제4부로 분류되는 헌법상 독립기관임

○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관련하여 크로아티아의 국가 의전서열은 ① 대통령, ②국회의장, ③수상, ④헌법재판소장 순임

7. 연락처

○ 주 소 : Trg svetog Marka No. 4
10000 ZAGREB
CROATIA

○ 전화번호 : +385 1 6400 250

○ 팩스번호 : +385 1 4551 055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usud.hr

※ 출처 :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웹사이트

크로아티아 헌법

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법

(2016. 10. 작성)